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자 교육에 대한 시책 마련 등 〉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4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보호자 교육에 대한 시책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2024. 8. 8.
3. 회부연월일: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보호자 교육에 대한 시책 마련 등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보호자의 의무 등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u>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u>
--	---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로,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이 중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 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할 권리와 책임,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2023년에는 「교육기본법」 등 개정으로 보호자에 대한 일부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교육기본법」에는 교원 및 학교가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존중할 의무가 신설되었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 존중 및 지원, 교원과 유치원·학교의 전문적 판단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등이 신설되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신설되었음.

1)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표 1] 보호자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법률명	개정내역	개정 주요내용
교육기본법	법률 제19736호 2023.9.27. 개정, 공포일 시행	§13③ 보호자에 대해 교원 및 학교가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존중 의무 신설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9.27. 개정, 공포일 시행	§21의4 보호자에 대해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존중 및 지원,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 판단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신설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9.27. 개정, 공포일 시행	§18의5 보호자에 대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존중 및 지원,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신설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2023.9.27. 개정, 2024.3.28. 시행	§26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자료: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이와 같이 교육 관련 법률에서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은,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²⁾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6	0.9	1.1	1.7	1.9
초등학교	3.6	1.8	2.5	3.8	3.9
중학교	0.8	0.5	0.4	0.9	1.3
고등학교	0.4	0.2	0.2	0.3	0.4

주: 1. 피해 응답률은 전년도 2학기부터 조사시점까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1차 조사: 전수조사, 2차 조사: 표본조사)되며, 위의 피해 응답률은 각 연도 1차 조사 기준임.

3.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20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그 외의 연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됨.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활동 침해 건수	2,662	1,197	2,269	3,035	5,050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그러나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개정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①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의5제4항), ②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의3),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안 제18조의5제4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제1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존중 및 지원(제2항),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 존중 및 적극 협력(제3항) 의무 등³⁾에 대해 이행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규정될 경우, 보호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규정된 보호자의 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4)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교원지위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과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서 보호자의 의무 등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4,2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보호자의 의무 등 실태조사 (안 제18조의5)	42	-	-	-	-	42	8

주: 교육부의 유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실제 조사대상 규모, 범위,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② 안 제28조의3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보호자 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부의 연도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계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획」에는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라는 목표 하에, ‘학부모 교육 활성화, 참여·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실현,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등 3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됨.

이러한 보호자 교육과 지원 등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내 학부모정책과 주관 하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내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출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음.⁶⁾

교육부에서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타 지원을 하는 근거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⁷⁾

6) [2024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출연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 및 제경비	133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운영 등	64
	소계	197
특별교부금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1,615
	학부모 소통 강화	1,875
	소계	3,490
합계		3,687

자료: 교육부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6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⑱ 학부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6.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8.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보다 명확한 근거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호자’,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학부모 지원 사업에서는 ‘학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내에서 ‘보호자’와 ‘학부모’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용어 사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표 3] 「초·중등교육법」 상 ‘보호자’, ‘학부모’ 사용 조문

구분	조문 내용	
보호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5(보호자 의 의무 등)	① 보호자 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 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구분	조문 내용	
		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학 부 모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자료: 「초·중등교육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교

현행	박성훈의원안	신정훈의원안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561호, 2024. 7. 10. 발의, 2024. 7. 11. 회부)

현행	박성훈의원안	신정훈의원안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사항 없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학부모</u>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u>교육 활동</u>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u>자녀</u>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u>학교</u>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학생의</u>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u>학생</u>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생의 부모</u>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u>교육활동</u>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u>학생</u>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현행	박성훈의원안	신정훈의원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 현행법과 비교하여 신설되는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기하고, 개정안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학교 의견]

○ 교육부

- (안 제18조의5제4항) 보호자의 의무 등 이행 점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신중 검토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보호자가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와 협력할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호자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보호자 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며, 「교원지위법」상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에 따른 실효성 및 교육 현장의 업무가 중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문 신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8조의3) 보호자 교육 시책 마련 및 교육 실시,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일부 수정

-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육부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 교육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부모정책 근거 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해당 법안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법안 주요내용(안): 국가·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학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부모교육 실태조사 등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부모’, ‘보호자’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용어 사용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용어 및 조문체계

의 정리가 필요함. •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수산초등학교: 신중 검토 필요 - 안 제28조의3 학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권한과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수정안)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교육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 소환 및 교육 이수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조항 마련

문 의 처
02)6788-5189